

# 내부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2011.6.24.제정(지침 제164호)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임직원행동강령 제26조의 3항에 의거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내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병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신고”라 함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병원 임직원의 신고를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병원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신고자 포상”이라 함은 병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고자 보상”이라 함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병원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신고대상 행위)**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직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병원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행위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4. 기타 병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의 계약 등과 관련한 불법 부당 행위

**제 4 조 (신고의무)** 임직원은 다른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위반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신고방법)** ① 제3조 각 호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방문, 그룹웨어,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신고사항의 조사)** ①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③ 부패행위의 신고는 그 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신고 및 신고 기간이 지난 것은 처리·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 조 (조사결과 통보)**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감사에게 보고 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 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정보는 관련 법률 등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 9 조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자는 신고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또는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 10 조 (협조자의 보호 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 신고 사항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비밀 및 신분보장 등은 신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협조자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병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신고자에게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병원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상금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감사
2. 위 원: 행정처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연구부장, 간호본부장으로 구성한다.
3. 보상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보상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상심의위원은 보상심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상금 지급심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제8조에 의한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 15 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이 수령하여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세금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16 조 (보상금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감사원·사법기관 및 병원 감사실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제 17 조 (보상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관련법률 등에 의하여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 18 조 (책임의 감면)** 내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부칙

1. 이 지침은 2011. 6. 24.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수익증대(손실감소)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0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600만원+5천만원 초과액의 8%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000만원+1억원 초과액의 6%
3억원 초과	2,200만원+3억원 초과액의 4%
보상 한도액	최고 1억원

주1)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표 1]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개 인	
	소 속		번 호	
	진 화 번 호	핸드폰	E-mail	
	주 소		원 내	
피신고자	성 명		개 인	
	소 속		번 호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동의    부동의 <b>※ 회신은 15일 안에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b>				
제 목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컨트롤			